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51
----------	------

발의년월일 : 2020.10.26.

발의의원 : 김원규 의원
김동식 의원
박갑상 의원
배지숙 의원
윤기배 의원
안경은 의원
이영애 의원
임태상 의원
전경원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민간 건축공사의 발주물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던 지역건설산업의 회생과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건설업체의 부재 등 지역건설업계 전반의 경쟁력 부족으로 증가한 발주량에 비해 수주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건설시장을 선도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시공 및 설계에 지역업체의 대표사 참여가 매우 저조함에 따라 지원시책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발주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서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건설업계의 수익성 개선과 대규모 공사실적 확보를 통한 입찰 경쟁력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의 추진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모두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등의 사항에 대해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주택법」)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설계와 시공에 각각 대표사로 참여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등의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6조의2(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설계와 시공에 각각 대표사로 참여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등의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u></p>

(붙임 2)

관계법령

【주택법】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6.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를 부치는 사항

② (생략)

③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국가교통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6. 제1항제6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